

일찍이 토마스 고든 박사(Thomas Gordon, Ph. D.)는 1950년부터 기업체의 문제를 진단하고, 40여년을 두고 의사소통을 통한 인간 관계 개선에 관하여 연구를 거듭하여 왔다. 한편 사회과학자들에 의하면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조직들의 특징은 모두가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사(APEC Engineer)의 국제간 상호인정에 대한 동향

I.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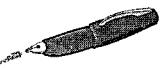
허 진
동남아태평양공학회연합
(FEISEAP) 부회장

요즈음 Globalization이란 말이 자주 들리는 시대가 되었다. 국지적인 분쟁으로 세계 여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도 있지만 Globalization의 말은 독립된 나라의 존재를 전제로 한 뜻이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큰 뜻을 가지는 것이다.

1948년 창립한 국제기관인 관세무역일반협정 GATT(General-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은 물자의 국경선을 넘어서 이동하는 무역을 용이하게 하며 세계경제의 발전을 기하는 관세를 중심으로 하는 무역장해를 제거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GATT를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1995년 설립된 세계무역기관 (WTO ; World Trade Organization)은 GATT와 비교하면 세가지 항목이 다른 점이 있다.

첫째, GATT에서는 물질의 국경선을 넘는 이동에 국한한데 비하여 사람이 제공하는 Service의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의 국



제적 규율을 만든 것이다.

둘째, GATT는 국제적 Rule이 충분하게 적용되지 못했던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국제적 규율을 적용하게끔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WTO 협정에 위배 되었을 때 제소하게 되며 분쟁처리 Panel에서 의논하게 되다 Panel 정보의 채택 대항처치의 승인은 전가입국이 반대하지 않는 한 부결되지 못한다. 즉, Negative Consensus 방식에 따라 승인되는 것이다. 이민과 미숙련 노동자들의 국경선을 넘는 이동은 제한되어 있지만 사람이 제공하는 고도의 Service의 자동화는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외교통상부가 WTO/GATS의 문제 전단을 맡고 있다. GATS는 모든 Service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의 투명성과 점진적 자유화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격요건, 가격검사에 대한 수속 Service 무역에 대해서 불필요한 장해가 되지 않는 필요한 규율을 작성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으며 WTO에 필요할 권고를 할 수 있는 작업부도 설치하고 있다. GATS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직업은 기술사(Professional Engineers)를 비롯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건축사등 특정한 직업에 종사할 때 면허를 필요로 하는 여러 분야의 직종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술사의 상호인정은 기술사 단독의 문제가 아니라 WTO/GATS의 움직임의 일부로서 그간 회원국의 적극적인 협조로서 상호인정 발족을 목전에 두고 있다.

Ⅱ. 기술사의 상호승인 동향

1) WTO/GATS와 지역간 2국 협정

WTO/GATS으로서는 ① 직업인으로서 제공되는 Service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정, 객관성, 수명성에 따라 취업인에게 면허부여하는 것을 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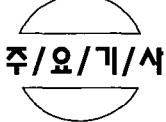
② 각국이 취업인의 면허를 부여하는 요건은 국제적인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각국이 면허를 부여하는 조직의 자유재량에 위임한다.

③ 직업인의 면허를 상호인정코자 할 때는 면허부여조건을 반드시 갖출 필요까지는 없지만 상호 인정 협정체결에 전향적으로 처리해야한다.

④ 교육 Curriculum이 상호협정 체결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교육 Curriculum은 당연히 교육자나 면허를 부여하는 조직에서는 주목할 만한 유의사항이다.

기술사의 상호인정은 원래 WTO/GATS의 일이지만 각국의 기술사의 자격요건이 다르고 상호인정협정을 작성하는데 용이하지 않는 점등 그외 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건축사등 각국 정부에서 볼 때 보다 긴급성을 요하는 분야가 있다는 점은 현재로서 기술사의 상호인정에 대해서는 WTO/GATS 이외의 NGO에서도 활발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APEC HRD에 자문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사 자격에 대해서는 면허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역사적 경위로 법정비를 행하기 전에 기술사회에 면허를 부여하는 권한을 주어 현재에도 정부기관이 아닌 기술사회가 면허를 주는 나라가 혼존하고 있다. 영국계로서 동남아태평양지역에서는 Australia, Newzealand 항항등이다. 그러나 정부간의 협정인 WTO/GATS에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다. 이외에 기술사가 중핵 member가 되어 있는 동남아태평양 공학회연합 (FEISEAP) 및 세계공학회연합 WFEO(World Federation of Engineering Organization)에서는 오래 전부터 기술사의 상호인정, 협정문제가 의논되어 결과적으로 APEC 지역간의 정부간 협력의 기초가 된 것이다. 물질교역과 같이 기술사의 상호인정협정으로 지역 경제권과 무역권내에서 체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내 협정과는 별도로 2국간 협정을 맺은 나라도 있다.

2) 북미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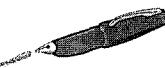
지역의 협정으로서 현존하는 북미자유협정 NAFTA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의 일부로서 '95년 5월 체결한 가국, 미국, Mexico 간의 기술사 면허 상호인정 확인서(Mutual, Recognition Document and Recommendations to NAFTA Commission)이다. 이것은 1국에서 면허를 받은 기술사의 면허는 협정내 다음 2개국에도 유효하다.

그렇지만 이 협정은 연방정부의 협정이다. 기술사 자격시험의 실시와 면허는 주정부 권한으로 국내 주정부간의 상호인정은 하고 있으나 지역의 주정부 면허는 거의 인정되고 있지 않다. 다만 Mexico 접경을 이루고 있는 Texas 주를 비롯한 몇 개 주에 불과하다. 다만 상호인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기술사자격취득후 최소 12년의 Full Time 실무경험을 요하며 그 중 8년간은 독립된 실무경력을 말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NAFTA의 면허를 수여하는 요건으로 국적 및 장기 주사요건이 배제되어있는 점이다.

3) 구주의 동향

EURO 통일권을 창설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옛날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이제 구주 공동체 EC(European Commission)을 거쳐 Euro 연합 EU(European Commission)가 창설 되어 현재는 공통통화 Euro 도입에 이르렀다. 구주적국에서는 기술사의 면허는 나라마다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다. 따라서 상호인정이라기 보다는 통화의 Euro에 대응하는 통상가격을 만드는 것이 용이한 것으로 사려되어 Euro 공학회연합 FEANI(European Federation of National Engineering Associations)가 Euro 기술사제도를 만들었다. 1970년 European Register of High Technical Profession을 만들고 이어 1992년 제도개정으로 지금의 Euro 기술사 FEANI(Register of European Engineers)제도이다. 이 자격을 충족하는 안전으로 ① 18세 년령을 표준종료연한으로 하는 중등교육졸업 ② 그 후 3년간의 FEANI가 인정하는 대학수료 ③ 같은 2년간이 FEANI가 인정하는 대학의 계속교육의 수료 또는 실무경험, 혹은 기술훈련의 수료 ④ 다시 2년간 실무경력이다. FEANI는 Euro 기술사제도를 만들었으나 EC 가입국에 강제국은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Euro처럼 제도가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는 나라에서 FEANI 기술사제도가 타국에서 인정되는 것은 기술사 자격을 충족시키는 최저요건이 Euro 기술사 면허의 자격보다 얇은 나라 뿐이다.

따라서 직무에 실체취업은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Euro 기술사면허의 FEANI 가입권내의 유효성 실태는 이제 서서히 이루



어지고 있다.

영국의 Chartered Engineer가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Euro 기술사의 면허가 나오나 Euro 기술사를 영국의 면허를 부여하는 영국평의회(The Engineering Council)에서 인정하느냐는 아직 미정이다.

4) 동세아태평양 지역의 동향

동세아 태평양지역의 기술사 상호인정은 착실하게 추진하게 된 것은 호주와 Newzealand 양국 및 향항의 열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3개국은 모두가 정부가 법률에 기반을 두고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사의 면허는 영국왕실로부터 부여된 현장에 기인한 공학연합회(Institution of Engineers) 혹은 기술사회(Institution of Engineers)가 부여하는 것이다. Newzealand는 기술사 호주 및 향항은 Institution of Engineers 이지만 기술사가 주도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의 연합으로서 동남아태평양 공학회 연합 FEISEAP(Federation of Engineering Institutions of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내의 교육, 훈련위원회, 기술사업 무위원회가 APEC Engineer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80년초부터 가입하고 있으며 상설위원회는 비용문제로 보내지 못하고 위원으로서 현재 부회장을 필자가 맡고 있었다. 호주, Newzealand, 향항의 3개국은 Anglo-Saxon 계의 나라로서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세계공학회연합 WFEO(World Federation of Engineering Organization)을 통해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호주, Newzeal-

and의 2개국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경제의 긴밀한 무역 협정 (Australia-New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을 1996년 체결이 협정의 일부에 기술사의 상호인정이 포함되어있다.

호주 공학회연합 (Institution of Engineers Aust)은 기술사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반이 약한 Indonesia, Vietnam 등을 지원한 바 있으며 멀지 않은 시일내에 APEC Engineer의 2개국 또는 4개국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본다. 이에 향항, Malaysia, Singapore 등이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5) Anglo-Sxon 계의 국가들의 동향

기술사의 자격의 표준적요건은 공학부를 마치고 실무경험을 쌓은 것이다. Anglo-Saxon 계의 6개국(Island, Aust., Canada, Newzealand, 영·미)등이 1989년 기술사의 상호인정을 위한 제 1 보로서 자격요건의 하나인 공학부졸업자격의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가입국의 인정된 공학부의 졸업생을 대등하게 인정한다는 것이 간접적 목적이다. 즉 Washinton 협정이다. 여기 참고할 것은 그 나라에서 기술사를 인정하는 공학회연합(가, 미국을 제외한 4개국)과 기술사 인정을 하는 단체가 인정하는 대학의 공학부를 평가하는 평가단체(가, 미국)이다.

그후 남아프리카, 향항 등이 추가되어 8개국 협정이 되었다. Washington 협정가입이 8개국이 기술사의 상호인정을 목적으로 1996년 3월 향항에서 모였다. 이 모임에는 FEANI가 초대되었으며 기술사 상호인정을 구주적국으로 넓히자는 것이다. 향

학부졸업수준은 나라의 제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데 반하여
경험을 쌓은 기술사는 학부수준졸업
후의 직업인으로서의 훈련 및
경험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기술사의 기술수준을 어느정도의
발전에서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함으로 상호인정의
대상으로서 이 경험을 쌓은
기술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되어 있다.

항에서의 의논된 결과 ① 학부졸업시의 학업의 동등성을 논의하는 것은 기술사의 상호인정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이 못된다. ② 기술사의 기량이 동등한 것이 중요하다. 이상 두가지 점에서는 다같이 동의했다.

Washington 협정을 채결해 놓고 “학부졸업시의 학업동등성을 의논하는 것은 기술사의 상호인정에 대해서 건설적인 공헌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Anglo Saxon 계 나라의 교육시스템과 다른 교육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는 구주대항들의 나라들과의 상호인정을 맷고자 하는 의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기술사의 상호인정은 기술사의 기량의 등가성의 평가가 정당하다고 하지만 등가성의 객관적 평가는 곤란함으로 현재로서는 여러나라의 기술사제도를 존중한 다음 기술사면허를 취득후 어느 정도의 경험을 가진 기술

사를 상호인정의 대상으로 하자는 건설적이고 실현성이 있는 제언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사를 Full Professional Level의 기술사라고 호칭하며 평가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것은 미국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상호인정 System의 조기확립을 위해서 1997년 San Diego에서 8개국 대표들이 다시 만났다. 기술사의 표준적 자격요건으로서 ① Washington 협정이 생각하는 인정된 교육 또는 동등의 질이 보증된 교육을 받을 것 ② 실무훈련을 쌓을 것 ③ 적절한 연대에 적절기간의 만족할 만한 실무경험을 쌓을 것 이상 세가지 요건이 기본이 된다는 것에 동의했다.

교육에 대한 요건은 향후의 동등한 내용보다는 약간 후퇴했지만 상호인정의 곤란시 되는 점을 피하기 위해서 상호인정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의 기준을 높이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따라 Full Professional Level을 NAFTA의 상호인정과 같은 실무경험으로 대치하자는 것이 제안되고 있다. 언어의 문제에 있어서는 수입국의 통상업무에 대한 기술문서를 이해하고 그의 일상업무를 해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실무에 종사하는 나라의 기술기준도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필요성도 상호인정의 요건의 하나가 될 것이다.

아직 구체적 대응안은 제안된 바 없다. 다른 한편으로 독립해서 Consultant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기업내에서 직무에 종사하는 기술사 그리고 합병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사 간에는 언어의 요구 및 기준의 이해도에 대해서 필요성은 크게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지적된다.



공학교육 수준의 동등성과 기술사의 상호인정과는 별개문제라고 강조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논할 만한 Theme이다.

6) APEC Engineer Project의 동향

호주 공학회연합은 영국계의 나라들 뿐 아니라 아세아의 여러나라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은 법률에 따라 면허를 주는 나라로서 아세아 태평양 연합만이 검토한 상호인정협정 체결은 곤란시 되는 것으로 판단 호주정부와 일체가 되어 정부간 협의로서 이 문제를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이 지역의 정부간 협의장으로서는 호주연합,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응 경제Group으로서 Malaysia의 Mahatil 수상이 제창한 아세아경제회의가 실현되지 못해 미국과 가국을 포함한 아세아태평양경제 협력회의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이 검토키로하고 APEC의 인재양성개발부회 HRD(Human Resources Development)에서 호주정부의 지원으로 호주공학회 연합이 주도가 되어 기술사 상호인정의 작업이 진행하게 된 것이다.

1996년 5월 Sydney에서 APEC HRD의 제1회 운영위원회를 1997년 3월 Bali 섬에서 제1회 작업위원회를 1997년 6월 Melbourne에서 제2회 운영위원회, 작업위원회의 합동협의가 개최되었다. 그후 1997년 8월 Manila에서 Work Shop을 연 다음 11월에는 제3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연말에 최종보고서를 작성 APEC 가입국에 송부하게된 것이다. APEC의 HRD의 작업이 마무리되어 가입국이 동의하면 기술

사의 상호인정에 동의한 나라끼리 실시하게되는 것이다. 제1회 작업위원회에서 기술사의 상호인정에 관해서 ① 기술사는 학부졸업수준으로 타인의 감독밑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허락되는 사람(Graduate Professional Engineer or Equivalent) ② 최소한의 감독밑에서 충분한 책임을 가지고 작업을 한 경험을 가진 기술사(Experienced Professional Engineer) ③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고 고도의 기술적, 혹은 직무의 Management 책임을 가진 기술사(Executive Professional Engineer or Equivalent) 등 3가지 분류이다. ②의 경험을 가진 기술사의 수준은 명확한 기술은 없지만 ①의 수준에서 4년 정도의 실무 경험을 가지고 독립해서 기술사업을 할 수 있는 30세 정도의 기술사를 뜻하는 것이다.

학부졸업수준은 나라의 제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데 반하여 경험을 쌓은 기술사는 학부수준졸업 후의 직업인으로서의 훈련 및 경험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기술사의 기술수준을 어느정도의 발전에서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함으로 상호인정의 대상으로서 이 경험을 쌓은 기술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되어있다. 제1회 작업위원회에서 상호인정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사의 수준은 Washington 협정에 가입국이 San Diego 회합에서 제안하고 있다. 학부졸업수준으로부터 최저 12년간의 Full Times 실무경험을 쌓은 기술사 수준에 비하면 많이 떨어져있다. 그 외 학부졸업수준의 기술사에 대해서는 교육이 질과 자격에 대해서는 투명성있는 보증이 필요하고 있다. 제1회 작업위원회에서는 수입국이 언어의 문제 및 기술사수준에 대

한 이해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된 바 없으나 8月의 Manila 회의에서 의논시 출발점인 안건에는 두가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Washington 협정 가입국의 San Diego 회합에서의 제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들어있다. Melbourne의 운영위원회에서는 경험을 쌓은 기술사의 상호인정된 기술사를 APEC Engineer로 칭하고 있다. 이는 Euro Engineer(유로 기술사)에 대응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1980년 발표된 동남아태평양공학회연합회 FEISEAP은 회기 2년마다 가입국을 순회하면서 총회를 개최하고 각분야위원회는 년2회정도로 열리게된다. 이 기구는 NGO로서 각국 대표가 기술사(Professional Engineer)로 되어 있음으로 주된 의논은 기술사업무위원회(Professional Practice Committee)와 공업교육 및 훈련 위원회(Engineering Education and Training Committee)가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한국대표가 참가하게 된 것은 1994년 제3회 총회때이다. 당시 가입단체로는 한국과학기술단총연합회 명의로 되어 있어 당시 이사인 필자가 처음 선을 보게된 것이다. 국내사정으로는 원래 정부보조금이 없어 과기총 자본에서도 자비로 가는것도 잘된 것으로 생각할 때이다. 그러나 막상 회의에 나가서 여러 대표들을 만나 보니 아세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가는 부자나라에서 왔다고 부러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반공최전선에서 고생이 많다고 위안도 해주며 그렇게 친절히 해주는데 정말 잘 왔다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니 호주대표가 기술사의 상호인정건에 대한 초안을 가져와서 각국대표들의 실정을 듣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은 것이

다.

1986년에 이르자 제4회 총회를 한국에서 유치했다. 당시 창원에 있는 한국중공업(주)(대표 성낙정)이 과기총 부회장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준비위원장 성낙정, 부회장인 필자가 3박4일간의 회의를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어 명실공히 그들이 말하는 부자나라의 명목을 갖추게 되어 일생일대의 큰 기쁨을 안게 되었다. 그후 1980년 후반기까지는 매년 참가했으나 90년대 들어 한국기술 사회 부회장직을 겸하게 되다보니 바쁜 일정에 과기총 일에 대해서는 자연히 등한히 하게 되어 1996년에 이르자 비로서 FEISEAP 회의가 우리나라로서는 너무 소홀히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선 과기총 명의로 되어 있는 FEISEAP 정회원권을 한국기술사회로 변경하고 이에 정시허가를 받기 위해 1996년 4월 북경에서 개최되는 제 9회 FEISEAP 총회에 참석하여 명의변경案에 대한 동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그간 APEC Engineer건의논이 계속으로 우리나라와는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으로 총회 분과위원회 할 것 없이 성실히 참가함으로서 1998년 3월 제10회 총회에서 필자가 부회장으로 피선되어 오는 2000년 제11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피선되면 우리나라의 총회유치가 8년만에 다시 열리게 되는 셈이 된다.

FEISEAP가 NGO인데 반하여 1996년 5월 Sydney에서 APEC HRD(Human Resources Developement)가 Go로서 제1차 운영위원회를 효시로 APEC Engineer Project를 년 2회 이상 회합을 거듭하며 기술상호인정안이 만들어져 이를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1999년 6월까지

기술사(APEC Engineer)의 국제간 상호인정에 대한 동향

Sedney에 각 가입국은 APEC Engineer 심사등록위원회(Monitoring Committee) 안을 제출토록 되어있다. FEISEAP 회의와는 APEC Engineer Project에 관한 APEC HRD에서도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 교육부에다 한국대표를 파견 토록 권유한 바, 피일차일 미루다가 1998년 11월 처음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한국대표를 보낸 바 있다. APEC Engineer 심사등록 위원회는 기술사의 상호인정에 관한 사항이니 일본, 호주등과 같이 우리 기술사회가 대행하도록 전의 했으나 노동부의 입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맡기로 하여 현재 작업중이다. 1998

년 12월 교육부 주최로 노동부 과학기술부 기술사회, 엔지니어링 진흥협회, 토목협회 등 관민합동합의를 필자가 주도 끝에 합의하기를 APEC 심사등록 위원회는 기술사회내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의까지 유도했으나 과기부의 무관심으로 노동부가 맡게 된 것이다.

※ 한국의 대응방안 및 맷음말은 다음호에 게재 예정임.



FEISEAP 24차 執行 委員會

21 May '99

前列 Mr. Grear 技術教育 委員長(前회장 El Aust.)

Dr. Narong 泰國工學會長 - Mrs Nitaya 技術環境委員長 - Blake 會長 - 許填 副會長
- 西野 前會長 - Dr. 青島 UNESCO - Mr. Kwok 事務總長

後列 中國, Malaysia, Indonesia, 濟州 香港